

## 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488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09 월 18일
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시흥시사회조사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경기도 시흥시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625003호 [2015.07.28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09.11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 전 조사표	변경 후 조사표	사유
조사표 항목	○ 특성항목(가구주 기준) (54-2) 서해선(소사~원시)과 경강선(월곶~판교) 최종 도착지역의 응답 문항 6개 ①고양 ②부천 ③서울 ④안산 ⑤김포 ⑥기타( )	○ 특성항목(가구주 기준) (54-2) 서해선(소사~원시)과 경강선(월곶~판교) 최종 도착지역의 응답 문항 7개 ①시흥시 관내 ②부천 ③서울 ④안산 ⑤김포 ⑥고양 ⑦기타( )	응답문항에 ①시흥시 관내 추가로 삽입함